



즉시 배포용: 2021년 12월 2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법규 제정 절차에 공공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

법안(S.0155/A.6267)에 따라 정부 기관은 규정 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를 조직하여 공공 참여를 권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 사용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법규 제정 절차에서 공공 참여 역량 확대를 위한 법안(S.0155/A.6267)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정부 기관은 공공 참여 확대를 위해 비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반 시민은 특정 법규 또는 규제에 대한 공청회를 정부 기관에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행정부는 주정부 공개 및 투명성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 주민을 위해 일반 시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주요한 조치인 이번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정부 기관의 운영은 폐쇄적인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봉사하는 일반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된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안 S.0155/A.6267에 따라, 뉴욕주 행정 절차법(Stat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APA)은 주정부 기관이 다음과 같이 규정 제정 과정에서 일반 대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SAPA에 의거하여 공청회를 열 수 있게 개정됩니다.

- 기관 패널에게 시민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 배분,
- 라운드테이블 토론 등 공청회 조직, 저녁이나 주말 공청회 실시,
- 디지털과 방송 등 원격 화상 기술 활용.

이번 법안에 따라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정부 기관은 공공 의견 수렴 기간 마감일 최소 30일 전에 충분한 청원을 받았을 경우, 뉴욕주에 거주하는 사람의 서명이 정족수를 초과한 청원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일자를 초과하여 청원을 접수한 기관과 법안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의 경우, 요청에 따른 공청회 실시는 선택사항입니다. 정부 기관은 특정 지역에서 공청회를 실시해달라는 요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 법안으로 이미 공청회를 실시했거나 실시할 예정인 법안, 합의 법안, 비율 지정 관련 법안, 비상 사태에 근거한 법안 등에 대하여 기관은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법안은 노동자 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가족 지원부(Department of Family Assistance) 등의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청원을 받아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Michael Gianaris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정부 투명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진보적인 이상에 맞추어 우리의 정부에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념을 함께 추구하고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Zohran Mamdan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정부 기관은 우리의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유의미한 대중 참여를 새롭게 독려할 이번 법안을 환영합니다. 이를 통해 단지 이름 뿐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